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23-126

제출년원일 : 2023. 11.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「건축법」 제87조의3 및 「서울특별시 건축 조례」 제50조에 따른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건축안전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(안 제8조)

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1)「건축법」 제87조의3(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) 및 「서울특별시 건축 조례」 제50조(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·운영)

2)「지방재정법」 제9조(회계의 구분)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 : 2023. 8. 24. ~ 9. 13. (제출된 의견 없음)

2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
3) 가족행복지원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: 개선사항 없음

4) 제1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원안의결(2023. 9. 21.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 본문 중 “2023년 12월 31일”을 “2028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부서 개정안
제8조(존속기한)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,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	제8조(존속기한) -------- ------- 2028년 12월 31일---------, -------- ---- ---------- --- -------- --- ----------.
부 칙	부 칙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	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○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12조

3. 미첨부 사유

○ 본 조례는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해 조항을 정비한 것으로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이 아님

4. 작성자: 도시환경국 건축지원과 윤선민(☎02-3153-9443)